



## 2025년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역직구 온라인 판로지원 (일본) 기업 모집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5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역직구 온라인 판로지원(일본)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(입점사)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. 9월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

### 1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: '25. 9월 ~ 12월
- 사업내용 :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현재 기준)  
\* 단순 유통 불가 / OEM, ODM 계약서 필요 / 해외배송 가능제품
- 지원규모 : 20개사 내외 \* 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고득점 순
- 지원기간 : 입점 계약일 ~ '25. 12. 31.
- 지원가능 제품 하단 '표' 참조

지원기업 신청가능 제품군	지원기업 신청불가 제품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(기획·제조)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</li> <li>-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(콜라보레이션)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</li> <li>-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(도외 재배 시,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류, 의약품, 기업형 의료기기, 산업재, 원부자재류, 부품,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</li> <li>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보호, 상표,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</li> <li>-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</li> <li>-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</li> <li>-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</li> <li>-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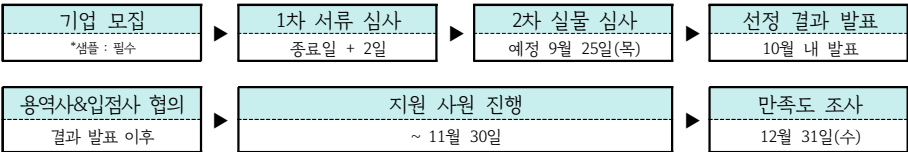
## 2 지원사업 세부 내용

### 1 지원사업

구분	지원내용
해외 역직구 일본 플랫폼 판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 플랫폼 상품등록 및 판매 관리 (용역사를 통한 입점 지원)</li> <li>- 경쟁력 검토 후 입점 프로세스 진행 및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책정</li> <li>- 입점 상품 번역 콘텐츠 지원</li> <li>- 마케팅 활성화 방안 지원 (홍보 및 프로모션 계획 수립)</li> <li>- 물류, 배송, 정산 지원 * 간접 지원 (금액 지원 없음, 대행 업무 수행)</li> </ul>

## 3 사업 진행절차 및 심사 내용

### 1 사업 진행 절차



### 2 심사 절차 및 내용

- 1차 심사 : 서류전형 \* 중소기업확인서/경기도사업자등록증 필수
- 2차 심사 : 외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\*샘플 필수

평가항목	세부항목
지원 필요성(10)	- 판로지원의 필요성,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
제품 경쟁력(30)	-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-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- 경쟁제품 대비 기술, 성능, 디자인, 가격 비교 우위 여부 -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-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
기업 역량(10)	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-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
기대 효과(10)	-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, 매출 증대 가능성 -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, 지식재산권, 투자유치 가능성
판매 적합도(40)	- 해외 판매 경험, 영문 등 외국어 소개서 보유 여부 - 제품의 글로벌 문화적 부합성, 해외 인증 보유 여부
총 점(100)	-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산점 (각 2점/최대 4점)	- (공통) 착한 기업 선정기업, 가족 친화 선정기업, 주 4.5일 도입 선정기업, 유니콘 기업 - (해외) 여성 기업, 장애인 기업, 사회적기업,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 기업, 관내 공장등록 및 기업부설 연구소, 국내의 인증 : 특허(출원 포함), CE, ISO 등 경기 수출프론티어 인증 기업,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(경기도, 경기도경제과학원)


# 4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 1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년 9월 10일 (수) ~ 9월 23일 (화) 18:00 까지
- 신청방법 :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
- ① **【사업신청】**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([www.kgcb.com](http://www.kgcb.com)) 접속  
 → 알림소식 → 사업공고 → 경기도 ‘2025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’  
 역직구 온라인 판로지원 (일본) 지원기업 모집 공고 선택 → 지원사업  
 신청하기 →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→ 구비서류 업로드 →  
 상품 등록(대표상품 1개 필수) → 접수 완료 \*샘플발송

### 2 필수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제출 서류 유의사항
작성 서류	[서식1]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	*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
첨부 서류	[첨부서류]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공장등록증)	*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,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합함
	[첨부서류] 중소기업 확인서/구제, 지방세 납부 확인서	* 서류가 많을 경우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 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.
	[첨부서류]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	* 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 (4p 사업별 가산점 항목 참고) * 착한기업 선정기업 인증서류는 회사소개 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
		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인증서 및 확인서
선택	[서식2] 이의 및 구제신청서	* 범위반 해당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제 신 청시에만 제출
	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	*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될 수 있음 * 용량 큰 경우 이메일로 후접 가능
샘플 발송	제품 샘플 (우편 또는 택배 발송)  우)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, 2동 7층 (삼평동,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)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역직구 (031-5171-5325)	* 제품 샘플 자료는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 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(대표상품 1개만 접수 가능) *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물가하며 큰 부 피, 고가제품은 사진, 팸플렛 등 자료로 대체가능 (사진, 팸플렛 파일 제출 불가시 우편 또 는 택배로 실물 제출해야 함) * 유통기한 짧은 냉장/냉동보관 식품의 경 우 밀봉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, 팸플렛 으로 대체

## 5 사업참여 유의사항

### 1 「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준수

- 조례 제6조에 따라, 법위반 사실 확인시 **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**
  -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
가.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  
나.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  
다.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  
라.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  -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  
가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  
나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
  -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(변경)  
(기존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 
**(변경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**  
가.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
나.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  - ④ 법위반사실 확인(변경)  
(기존)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 
**(변경)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**  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법위반조회발급/법위반사실조회)  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 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  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  - ⑤ 이의 및 구제신청(변경)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(서식9) 제출  
(기존)  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
나.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 
**(변경)**  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(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)  
나. 삭제
  - ⑥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(별첨 서류 작성 후 기타 자료 첨부)

**② 공정한 [ 공모 - 심사 - 선정 ] 추진**

-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(평가)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

**③ 가점 제도 운영**

- 평가표 가산점 항목 참조

**④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경기도 사무위탁조례」, 「경기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」,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,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**

## ☞ 제출 및 문의처

☞ 사업 주관부서 : 유통사업실

☞ 신청 · 접수 문의 : 조운서 대리 (Tel. 031-5171-5325, west@kgcbrand.com) 일본  
정선영 주임 (Tel. 031-5171-5326, young0313@kgcbrand.com) 일본

※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 이메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샘플 보내실 주소 : 우)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, 2동 7층  
(삼평동,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)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유통사업실 (031-5171-5325/6)